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전문개정 2010. 10. 8. 규칙 제 913호

개 정 2013. 10. 10. 규칙 제1153호

개 정 2014. 8. 8. 규칙 제12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조직 및 위원회 등의 설치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하 “법과정책연구원”이라 한다)은 법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특성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와 산학 간 협력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된 정책을 연구·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3조(업무) 법과정책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국내외 학술행사 및 공개강좌 개최
3. 간행물의 발간
4.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학술교류
5. 그 밖에 법과정책연구원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원장 및 부원장) ① 법과정책연구원에 원장 및 부원장을 둔다.

- ② 원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원장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부원장은 관련분야를 전공한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조직) ① 법과정책연구원에 비교법연구센터,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법연

구센터, 국제법무연구센터, 평화·인권연구센터 및 연구지원실을 둔다.

② 각 연구센터는 연구계획의 수립 및 연구과제의 수행 등 관계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연구 지원실은 기획·연구 업무의 지원, 연구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센터장) ①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제주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또는 연구능력이 탁월한 국내외 인사 중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연구지원실장) ① 연구지원실에 연구지원실장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연구지원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조교 및 직원) 법과정책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연구원 등) ① 법과정책연구원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등의 명칭과 임용·위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연구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부원장과 각 연구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외 위원은 특성화와 관련된 학내 및 외부 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과정책연구원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및 내규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편집위원회) ① 법과정책연구원은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조(학술지 발간) ① 법과정책연구원은 『법과정책』과 『국제법무』 등 2종의 전문학술지를 발간한다.

② 학술지는 종류별로 매년 2회 이상 발간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정) 법과정책연구원의 재정은 연구원 기금, 보조금과 연구용역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4조(세부사항) 법과정책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10. 10. 8. 규칙 제9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10. 규칙 제1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임용·위촉된 연구원은 해당 임기동안 이 규정에 따라 임용·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8. 8. 규칙 제125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2005. 12. 22. 제정

2008. 8. 18. 개정

2014. 8. 12.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법과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교내외의 전임교수 중에서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부원장이 겸직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편집위원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임명한다. 편집위원은 최소 6개 이상의 광역시·도 소재 대학 및 법학 관련 연구소나 기관에 재직하는 교수 및 전문가를 포함한다.

⑤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법과정책’과 ‘국제법무’의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편집위원으로의 위촉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이상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퇴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편집위원회에는 편집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2. 논문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의 지정 및 위촉
3.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사정 및 게재여부 결정
4. 학술지의 편집·인쇄 및 출판
5.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한 중요 사항

② 학술지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5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원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회의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부위원장이 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위임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5조(명예와 비밀의 보장) ① 편집위원은 법과정책연구원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원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누설하면 아니 된다.

제6조(편집실무위원회) ① 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편집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5인 내외의 편집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편집실무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원장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투고 규정

2005.	12.	22.	제 정
2008.	8.	18.	전면개정
2010.	1.	19.	일부개정
2013.	11.	25.	일부개정
2014.	2.	24.	일부개정
2014.	3.	7.	일부개정
2014.	8.	8.	일부개정
2014.	10.	7.	일부개정
2014.	12.	11.	일부개정
2015.	4.	3.	일부개정
2016.	4.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법과정책연구원(이하 ‘법과정책연구원’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과정책’과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될 논문의 작성요령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구성) ① 논문은 제목, 영문제목, 저자명, 영문저자명, 목차, 국문 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 순서로 작성한다.

② 필요한 때에는 제목 다음에 부제목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국한문 제목은 행을 바꾸어 대시(-)를 넣고, 외국어 제목은 콜론(:)을 넣어 표시한다.

③ 목차는 장(I, II) 또는 절(1, 2)까지만 작성하며, 주제어는 5개 이상 표기한다.

④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 등 3단 구성을 기본으로 하되, 표기상 ‘서론(序論)’으로 했을 때는 ‘결론(結論)’으로, ‘서언(序言)’이라고 했을 때는 ‘결언(結言)’으로, ‘머리말’이라고 했을 때는 ‘맺음말’로, ‘처음에’라고 했을 때는 ‘끝으로’ 등으로 한다.

⑤ 계층기호는 장번호 : I, II, …, 절번호 : 1, 2, …, 항번호 : 가, 나, …,

목번호 : (1), (2), …, (가), (나), … 1), 2), …, 가), 나), …, ①, ②, … 등의 순으로 한다.

⑥ 도표의 기호는 < >로하며, 표의제목은 도표의 상단에 기재하고, 그림의 기호는 []로 표시하며,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기재한다. (신설 2010. 1. 19.)

⑦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외국문헌(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여, 단행본, 학술논문 순으로 작성하되 참고문헌의 작성 양식은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처, 출판년도, 월, 00면-00면.으로 한다. (개정 2014. 10. 7)

⑧ ABSTRACT 및 key words는 영어로 한다. (개정 2014. 10. 7)

⑨ 국문초록 및 ABSTRACT는 25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 10. 7)

제3조(집필자 소개) ① 집필자 소개는 각주란에 하되, “* 법학박사(과정)·○○ 대학(교) ○○학과 교수”의 형식으로 한다.

② 공동연구논문인 때에는 논문작성에서의 역할(연구책임자·공동연구자, 제1저자·제2저자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한글사용) 한글논문의 경우 논문 중 제목과 저자명·목차·타이틀 및 각주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문헌인용) ① 국내문헌과 일본문헌에 대한 각주는 다음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 19)

1. 저서;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2. 논문; 저자, “논문제목”, 「책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3. 잡지;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4. 학위논문; 저자, “논문제목”, ○○대학교 대학원, 박사(석사)학위 논문, 출판년도, 인용면.
5. 기념논문; 저자,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발행처, 출판년도, 인용면.
6. 신문; 신문명, 발간일자, 인용면.
7. 인터넷자료; 인터넷자료 인용면을 포함한 전체 웹주소.

② 구미문헌(歐美文獻)에 대한 각주는 다음 요령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저자, 책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2. 저자, “논문제목”, 책명 또는 잡지명, 권호,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③ 판례에 대한 각주는 “대법원 2008. 8. 8. 선고 2008다118 판결”, 또는 “대

판 2008. 8. 8. 2008다118”로 하되 논문별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④ 논문각주에 페이지 표시는 ‘면’, 일본·중국문헌의 경우는 한자로 ‘面’, 영·미 문헌은 p또는 pp, 독일문헌은 S또는 SS 로 표시한다. (신설 2010. 1. 19)

⑤ 각주에서 이미 앞에서 인용한 저서 또는 논문을 뒤에 다시 인용하는 경우 전개서 또는 전개논문(상계서 또는 상계논문)으로 표시하고, 영미논문은 op.cit 으로 독일문헌은 a.a.O 로 표시한다. (신설 2010. 1. 19)

제6조(원고작성) ① 원고는 ‘한글 97’이상 버전 또는 그와 호환되는 워드프로그 램으로 작성한다.

② ‘편집용지’는 A4, 여백은 상하여백30, 좌우여백35, 머리말10·꼬리말 10·제본 0으로 한다.

③ ‘글자모양’은 본문의 글꼴은 신명조로 하고, 크기는 제목 13(진하게)·단원제목 12(진하게)·본문 11 포인트로 한다.

④ ‘문단모양’에서 여백은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로 한다.

⑤ ‘각주’는 줄간격 130%, 글자크기 10포인트로 한다.

제7조(원고분량) 원고는 제6조의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20매 내외로 한다.

제8조(원고제출) ① 투고자는 원고를 법과정책연구원 홈페이지(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의 ‘논문투고시스템’에 원고마감일까지 업로드 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고마감일까지 원고파일과 출력본 1부를 법과정책연구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원고마감일은 법과정책의 경우 1월 30일(3월 30일 발행분), 6월 30일(8월 30일 발행분), 10월 30일(12월 30일 발행분), 국제법무의 경우 3월 30일(5월 30일 발행분) 9월 30일(11월 30일 발행분)까지로 한다. (개정 2015. 4. 3)

③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투고자는 원고제출 시 투고할 논문과 논문게재신청서(별지서식 1), 저작물이용동의서(별지서식 2), 학술지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지서식 1)를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투고란에 업로드 해야 한다. (개정 2016. 4. 15)

④ 법과정책의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 15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며 논문 면수가 25면을 초과하면 1면당 1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11)

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은 게재료를 면제한다. 단, 초과 게재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1)

제9조(기타) ① 투고논문은 게재신청당시 타 학술지에 일부 발표하였거나 타 학술지에 중복게재 신청한 논문도 투고가 허용된다. 다만 타 학술지에 게재확정이 되었을 때, 중복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10. 1. 19)

② 원고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 제6항, 8항 제5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2항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 제2항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개정에 따라

‘법과정책연구소’를 ‘법과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 제2항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과정책」 제21집 제3호에 한하여 논문 모집기한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 제3항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 게재 신청서

논 문	제 목	(한글) 본인 투고 논문의 한글 제목을 기입하세요!				
	(영문)	본인 투고 논문의 영문 제목을 기입하세요!				
	분 야	원고매수	A4	매	*	
연 구 책임자	성 명	한 글			영 문	
	학위명			생년월일		
	직 장	소 속				
		직 급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전화번호	
공 동 연구자	성 명	한 글			영 문	
	학위명			생년월일		
	직 장	소 속				
		직 급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전화번호	
<p>위 연구물에 대한 (법과정책, 국제법무) 제 집 제 호 게재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20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연구책임자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법과정책연구원장 귀하</p>						

* 원고매수에서 * 부분은 논문집규정에 따라 재편집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합니다.

* 논문투고분야는 국제법, 노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사학, 법철학, 사회법, 상법, 세법, 행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기초법, 기타법, 학제간 연구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심사규정

2005.	12.	22.	제 정
2008.	8.	18.	전면개정
2009.	2.	2.	일부개정
2010.	1.	19.	일부개정
2011.	1.	25.	일부개정
2011.	4.	19.	일부개정
2012.	10.	18.	일부개정
2014.	2.	24.	일부개정
2014.	3.	7.	일부개정
2014.	4.	16.	일부개정
2014.	8.	8.	일부개정
2015.	4.	30.	일부개정
2016.	11.	10.	일부개정
2017.	3.	2.	일부개정
2017.	4.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하 ‘법과정책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논문의 범위) ①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법학이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 ‘법과정책’에는 법학일반과 정책학 관련 논문을 ‘국제법무’에는 국제법무와 관련된 법학논문을 게재범위로 한다.

② 게재논문은 다음의 범위의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하고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결정을 얻은 논문에 한한다. 다만, 1, 2, 3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과정책연구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2. 법과정책연구원에서 기고를 청탁한 특별기고 논문
3. 법과정책연구원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획논문
4. 공인된 대학(교)의 전·현직 교수의 투고논문
5. 박사학위소지자의 투고논문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7.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자는 법과정책 연구원의 연구위원(이하 ‘연구위원’이라 한다) 또는 논문투고 자격이 있는 자(위 4, 5, 6호 해당자)와 공동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으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법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 4. 30)
8. 판례평석, 자료, 서평 등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심사대상 투고논문) ① 투고논문은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② 투고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논문심사 대상은 원고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④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임) ① 심사위원은 법학전공 교수 및 연구원, 해당분야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가운데 편집위원회가 선정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 19)

-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1편당 3명을 위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사위원은 당해 발간되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3편을 초과하여 심사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10)
- ③ 논문제출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6. 11. 10)
- ④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및 방법) ① 투고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구성의 논리성 (개정 2016. 11. 10)
4. 관련문헌의 적절한 활용 (개정 2012. 10. 18)
5. 연구결과의 의의
6. 문장의 독이성 및 논문의 독창성 (개정 2012. 10. 18)
7. 논문제목의 적합성
8. 관련분야에 미칠 파급력 (신설 2010. 1. 19)
9. 연구수준의 향상의 기여도 (신설 2010. 1. 19)
10.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신설 2016. 11. 10)

② 심사위원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각 항목 당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고, 10점에서부터 2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경미한 보완사항만 필요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하고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8)

[시행일 2017. 1. 1]

제6조(심사절차) ① 각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논문심사의뢰서 및 논문심사평가서(별지서식 1)와 함께 각 논문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심사의뢰 논문은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평가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평가서를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서식 2).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 게재가부 또는 보완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별지서식 3).

③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논문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사의 경우 이전의 논문심사위원 가운데 1인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2(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9)(별지서식 4)

제8조(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판정결과 게재할 논문이 적정하지 않은 정도로 다수인 경우에는 아래표의 기준에 의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일지라도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심사 결과의 순위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 3. 2) [시행일 2017. 4. 1.]

판정여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수정 후 게재

제9조(비밀유지의무) 각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0조(논문게재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 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게재 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개정)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4조 1항, 2항, 제5조 1항의 10, 11호, 제8조는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는 201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 2항 7호는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5조 및 제8조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별지서식2

별지서식3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개정에 따라 ‘법과정책연구소’를 ‘법과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개정내용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및 제5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투고논문 심사의뢰서

안녕하십니까?

논문심사를 허락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선생님의 연구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법과정책’(또는 ‘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논문을 첨부된 양식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각 심사논문 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술지의 질적 수준은 선생님의 엄정한 평가에 힘입어 더욱 발전적인 개선이 거듭될 것입니다. 수정의견과 게재 불가 사유는 물론 무수정 게재의 경우에도 논문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심사 논문 : 00000000000(논문제목) 등 0 편
2. 심사평가서 제출시한 : 2***년 **월 **일까지

2***. **. **.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장 0 0 0

0 0 0 귀하

논문 심사평가서

논문 제목 :

1. 논문의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우수			보통			미흡			항목별 점수
	10	9	8	7	6	5	4	3	2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구성의 논리성										
4. 관련문헌의 적절한 활용										
5. 연구결과의 의의										
6. 문장의 독이성 및 논문의 독창성										
7. 논문제목의 적합성										
8. 관련분야에 미칠 파급력										
9. 연구수준 향상의 기여도										
10.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총 점 (합 100점)										
최종판정	게재 가 (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79-70점)		수정 후 재심사 (69~60점)			게재 불가 (59점 이하)		

2. 논문 관련영역에 대한 연구기여도 평가

평가 항목	전혀없다	미미하다	약간있다	크다	매우크다	관련없음
1. 연구주제의 중요성						
2. 이론적 기여도						
3. 방법론적 기여도						
4. 연구결과의 실용성						

3. 논문에 대한 총평(해당항목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 : A(), B(), C(), D()
2. 아래 평가 항목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4.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제목 :
● 심사결과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심사의견 :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 게재신청논문 심사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 **. **.
심사위원 0 0 0 (인)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2〉

법과정책(국제법무) 투고논문 심사결과 종합보고서

법과정책(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에 게재신청논문에 대한 논문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심사결과 종합

구분	심사결과				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논문편수					

2. 논문심사결과

일련번호	논문저자	논문제목	심사위원			판정
			가	나	다	
1	000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2	000					
3	000					
..	..					

첨부 : 심사위원별 논문심사평가서 00부 끝

2***. **. **.

편집위원장

(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장 귀하

〈서식 3〉

법과정책 게재신청논문 심사결과서(통보용)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법과정책(또는 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별첨과 같이 통보합니다.

보완 및 수정사항을 보완하고 2***. **. **.까지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목			
투고자소속		성명	
심사결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심사요지	별첨		

- 첨부 : 1. 심사위원별 심사의견서 3부(〈서식 1〉 각 심사위원별 논문심사평가서의
4. 논문심사의견서를 심사위원 명을 삭제하고 첨부)
2. 투고논문 수정본 1부 끝

2***. **. .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장

0 0 0 귀하

〈서식 4〉

이 의 신 청 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청인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논 문 명				
결과통지서 수령유무	<input type="checkbox"/> 논문심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 에 받았음. <input type="checkbox"/> 논문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p>법과정책연구원 제 집 호 논문심사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법과정책연구원 편집위원장 귀하</p>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발행규정

2005. 12. 12. 제 정
2008. 8. 18. 전면개정
2013. 11. 25. 일부개정
2014.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제12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법과정책연구원(이하 '법과정책연구원'이라 한다)의 학술지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행) ① 법과정책연구원의 학술지는 '법과정책'과 '국제법무' 2종으로 한다.
② 학술지는 '법과정책'은 연 3회, '국제법무'는 연 2회 발행하되, 발행일자는 '법과정책'은 매년 3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국제법무'는 매년 5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개정 2013. 11. 25)
③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는 접수일(2***년 **월 **일), 심사완료일(2***년 **월 **일), 게재확정일(2***년 **월 **일)을 기재한다.
④ 학술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3조(논문게재순서) 학술지의 논문게재순서는 필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획논문이나 특별기고논문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별쇄본 및 전자출판)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학술지 1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개정 2013. 11. 25)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부담 하에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법학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할 수 있다.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한다.
④ 원고제출자는 법과정책연구원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인터넷,

CD-ROM 등 각종 모든 전자적 매체에 의한 전송 및 배포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5조(개정)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개정에 따라 '법과정책연구소'를 '법과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한다.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최우수논문상 규정

2014. 10. 1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제법무 최우수논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은 “국제법무 최우수논문상”(이하 “최우수논문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분야) 최우수논문상 시상은 전 분야 중 1편으로 한다.

제4조(심사대상논문) 최우수논문상 시상연도의 국제법무에 게재된 논문 중 당해 논문 심사위원 전부로부터 “수정 후 게재”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5조(심사선정위원회) ① 최우수논문 심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고, 최우수논문상 수상논문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심사한다.

③ 위원회가 수상적격 논문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최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부상) 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시상) 최우수논문상의 시상은 연 2회로 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

2008. 8. 18. 제 정
2010. 1. 19. 일부개정
2014. 3. 5. 전부개정
2014. 8. 8. 일부개정
2016. 4. 15. 일부개정
2016. 4. 29. 일부개정
2016. 11. 10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 및 수록되는 학술 논문 등 저작물의 연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 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개정 2016. 11. 10)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 11. 10)
 -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⑦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설 2016. 4. 29)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 및 교육) ①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논문 투고자는 투고할 때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지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5)
- ④ 법과정책연구원은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신설 2016. 11. 10)

제 2 장 연구윤리

제1절 투고윤리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① 투고되는 논문 등은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

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③ 타인의 저작물을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④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본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에 수록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작성경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⑥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⑦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본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를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저자결정 및 저자표시기준) ① 투고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저자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29)

②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는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담당할 저자를 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2절 편집윤리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제반 연구윤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심사윤리

-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판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 11. 10)
- 제7조(위반사실 고지의무) 심사자는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 및 제4조의 각 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의무)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윤리위원회

제1절 설치와 운영

- 제9조(설치와 구성)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교내인사 3인(부교수 이상인 자)과 교외인사 4인(부교수 이상인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과정책연구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절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13조(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조사 및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절 위반행위의 조사

제14조(위반행위의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예비조사위원 및 당해 조사 참여자를 포함한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

는 아니 된다.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조사·심의·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절 제 제

제19조(조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① 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향후 3년 이상 본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에 투고 금지

3.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본 규정의 위반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5. 소속기관에 통보
6. 관련학회에 통보
7.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 사항

② 위원회는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법과정책연구원을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단계에서 본 윤리규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조사결과외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21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20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기타 비용의 지급) 위원 및 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조사 및 심의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제반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완료된 후 그 결과는 법과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윤리위원·참고인·기타 조사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25조(개정) 본 규정은 본 법과정책연구원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7조는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개정에 따라 '법과정책연구소'를 '법과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는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1조의2, 제4조 제1항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개정 내용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송석언(위원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욱(부위원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주영(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남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진(부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군(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류화신(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마 광(중국 절강대학교) 박준선(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희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성조(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수용(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부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혜진(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은희(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정(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국제법무

第9輯 第1號

2017年 5月 25日 印刷

2017年 5月 30日 發行

發行處 : 濟州大學校 法과政策研究院

☎ 064-754-2996~7, FAX : 064-724-2313

發行人 : 허 향 진

編輯人 : 오 성 근

印 刷 : 온누리디앤피(☎ 064-722-0086)

〈비매품〉